

원격수업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본 대학교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온라인 수업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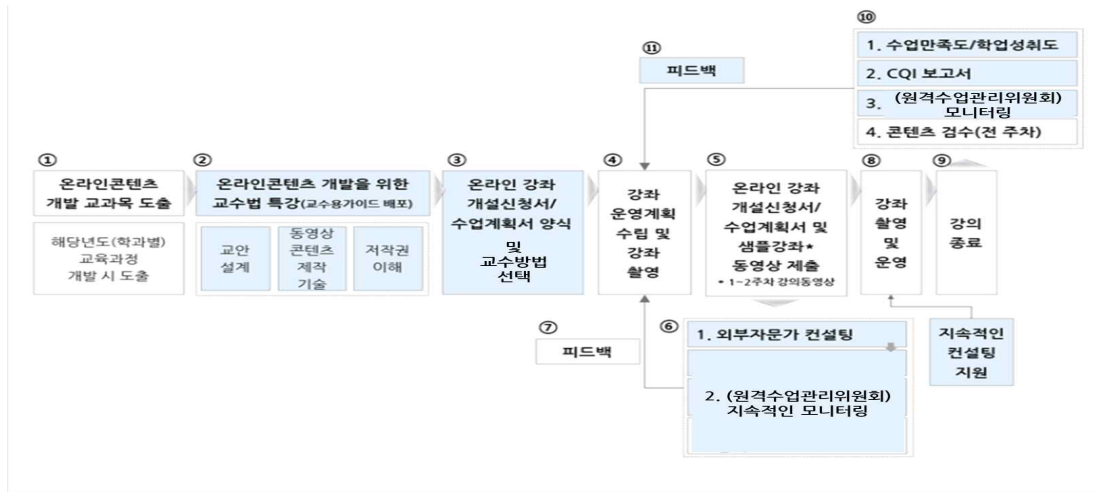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온라인 수업 운영을 시행하는 전 교과목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온라인 교육체계) 온라인 교육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축한다.

1. 온라인 교육체계(규정체제, 온라인 교육품질지원,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 온라인 인프라)

- ① 규정체제: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 ② 온라인 수업 운영 및 질 관리체계 : 온라인 교육운영체계, 온라인 교육품질지원,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 온라인 인프라 요소 포함

구분	교학처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
수업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목 개설 신청 및 강좌 open ▪ 강의계획서의 교수방법 선택 안내: e-Learning + 한 가지 더 선택 → 강의평가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확보 - 시스템 및 인프라 조성 ▪ 교과목 개설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된 교과목 온라인 콘텐츠 신청 ▪ 온라인 콘텐츠 설계 및 개발 지원 ▪ LMS 활용지원 ▪ 셀프스튜디오 사용법 워크숍 ▪ 교수를 위한 온라인 수업방법 워크숍(guidebook제공) ▪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학습방법 워크숍(tips제공)
수업중 수업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검수 ▪ 강의콘텐츠 품질 관리 모니터링 및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수업 컨설팅 지원 ▪ LMS 운영 및 개선
질 관리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평가종합결과보고서 ▪ 학업성취도종합결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수업용 CQI 통합분석보고서 ▪ LMS 환류



제4조(온라인 수업 구성 및 운영 기준 준수) 온라인 수업으로서 운용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매월 교학처에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원격수업관리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시 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에서 지원한다.(2020.5.20.개정)

1. 온라인 수업 구성 구성

- ① 온라인 수업의 수업시간은 1주에 1학점 당 50분이며, LMS에서 강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강의수강활동’과 과제, 퀴즈, 토론, 팀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는 온라인 ‘학습활동’으로 구성됨. 따라서 1주차 3학점 수업을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수업 시간은 ‘강의 수강활동’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최소 150분 분량이 되어야 함
- ② 온라인 수업의 전체 수업시간을 ‘강의 수강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온라인 ‘학습활동’만으로는 온라인 수업을 구성할 수 없음. 단, 과제중심 수업(캡스톤, 실습·실기 교과목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20.5.6.개정)
- ③ 온라인 수업을 구성할 때 ‘강의 수강활동’ 시간은 1학점당 25분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개의 강의 콘텐츠(동영상) 재생시간은 30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만약 강의 동영상 재생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에는 분절하여 2개 이상의 파일로 업로드하는 것을 권장함) 다만, 교강사의 재량에 따라 총 강의 시간 범위 내에서 영상 시간은 변동할 수 있음(2020.5.20.개정)
- ④ 온라인 수업의 강의 수강활동을 위한 강의 동영상은 교수자가 직접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강좌 및 동영상 콘텐츠는 1학점당 25분 이하로만 활용 가능함
(단, 외부 콘텐츠 활용에 대한 저작권 관련 책임은 담당 교원에게 있음)
- ⑤ 온라인 강의 분량이 학점당 50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엔 학생들에게 별도의 학습활동을 부과해야 함. 별도의 학습활동이란 LMS상에서 과제, 퀴즈, 토론, 팀 프로젝트 등 학생들이 시간을 투입해서 해당 주치의 학습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말함
- ⑥ 강의 동영상에는 교수자의 상반신이 나오도록 촬영되어야 한다. (2020.5.6.신설)
- ⑦ 캡스톤 교과목, 실습·실기 수업 등 과제중심 수업의 온라인 수업 강의 수강활동 시간은 예외로 함 (2020.5.20.신설)

2. 온라인 수업 운영

- ① 온라인 ‘강의 수강활동’과 ‘학습활동’은 모두 본 대학의 LMS 상에서 이뤄져야 하며, 출석에 반영되어야 함. 단, 학습활동에 대한 출석인정여부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처리한다. 단, 부가 학습에 대

한 기준은 1주차 안에 학생과 여론 수렴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증빙을 해야 한다. (2020.5.6.개정),(2020.8.12.개정)

② 온라인 수업 주차에 제공된 학생들의 학습활동 결과물에 대해서는 담당교수의 평가나 피드백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

③ 캡스톤 교과목, 실습·실기 수업, 집중이수제 교과목의 경우 강의수강 활동과 학습활동을 일부 또는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학습활동이 학점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과제난이도 등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2020.5.20.개정)

④ 온라인 수업의 과제는 일반 교과목의 경우 15주 기준으로 3회(3개) 이상 부과함을 원칙으로 함 (2020.5.20.개정)

⑤ 실시간 쌍방향 수업(ZOOM 등)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수업 종료 후 수업 녹화분을 48시간 안에 LMS 상에 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20.5.20.개정),(2020.9.29.개정)

제5조(온라인 수업 CQI) 온라인 수업의 강의 개선을 위하여 강의담당 교수가 ‘온라인 수업 CQI’를 작성하여 강의에 반영한다.

영역		세부 내용	점수 (5점척도)	추가기술
교육내용	수업분량	• 수업분량(온라인 수업동영상 및 학습활동)이 적절하였는가?		
	수업내용 난이도	• 수업내용(온라인 수업동영상 및 학습활동)의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다.		
	과제	• LMS에 과제내용, 분량 및 기한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		
		• 과제작성의 난이도 조정 필요하다		
		• 과제가 적합하였는가		
	퀴즈	• 난이도가 적절하였는가		
	성적	• 온라인 퀴즈 전략이 적절하였는가		
출석	• 평가 기준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출석	출석	• 출석관리 필요하다.		
	자료	• 온라인 수업동영상에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보조자료(그림, 표, 보조영상)를 적절하게 활용하는가?		
• LMS상의 자료실에 워크시트, 수업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하였는가				
교육방법	학습 활동 촉진	• LMS상에서 학습활동(온라인 수업영상 포함)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LMS상에서 활발하게 학생들의 참여할 수 있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졌는가?		
		• LMS상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필요하다.		
	교수법	• 온라인 수업동영상에서의 교수자의 말소리와 크기, 강약, 속도가 적절한가?		
		• 온라인 수업동영상에서의 교수자의 발음이 명확하고 전달력이 있는가?		
		• (해당시)온라인 수업동영상에서 교수자는 학생(카메라)을 보면서 적절한 표정과 태로 수업을 진행하는가?		
		• (해당시)온라인 수업동영상에서 교수자는 몸동작이 학습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의도적이고		

영역		세부 내용	점수 (5점척도)	추가기술
교육매체	온라인 교육콘텐츠	적절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콘텐츠 제작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온라인 콘텐츠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제6조(온라인 수업 개선 및 개설여부) ① 온라인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는 수업평가 규정에 준하고, 중간강의평가 결과가 75점 이하이면 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개선을 위한 교수법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 수업의 경우, 2학기 연속 학기말 강의평가결과가 75점 이하인 경우에는 차년도에 온라인 수업을 개설할 수 없다. 단, 국가 재난상황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온라인 수업 실태조사) ① 학습관리시스템(LMS) 품질개선 및 교수방법 등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는 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에서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실태조사 목적, 시행방법 등은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후 시행한다.

③ 교수가 작성하는 CQI 보고서 및 학생 수업평가와 중복된 문항은 제외하고 진행한다.

④ 실태조사 결과보고는 원격수업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구성원에 배포한다.

제8조(온라인 수업방법 매뉴얼) 온라인 수업 교수법 개선을 위하여 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에 매뉴얼 또는 가이드북을 교수자에게 제공한다.

제9조(기타) ① 강의담당 교원은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미준수시 전임교원은 교원업적평가에 반영, 외래교원은 재임용에 반영한다. (2020.5.13.개정)

②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지침 이름 변경)